

부산지방법원 2022. 5. 3 선고 2021가단408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A

피 고 1. C

2. D

3. E

소송대리인 D

4. F

5. G

6. H

7. I

변 론 종 결 2022. 4. 5.

판 결 선 고 2022. 5. 3.

주 문

1. 원고들에게, 피고 C, D은 각 2,944,866원, 피고 H은 588,973원, 피고 I은 392,64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. 6. 24.부터 2022. 5. 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 E, F, G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(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)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.
3. 원고들의 피고 C, D, H, I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원고들에게, 피고 C, D은 각 2,944,866원, 피고 H은 588,973원, 피고 I은 392,64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J는 1975. 4. 11. 부산 부산진구 K 대 37㎡ 및 그 지상 K, L 목조 와즙 2층건주택(1층, 2층 각 18.05㎡)(이하 ‘이 사건 구 건물’이라고 한다)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J와 J의 장남 M, M의 처인 N, M, N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구 건물에서 생활하였다.

나. J는 1991. 8. 10.경 사망하였고 M도 1997. 8. 10. 사망하였으며, 원고들의 어머니인 N은 1999년경 이 사건 구 건물이 노후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어 철거하고, 2층 양옥 주택(1층 벽돌슬라브 34.85㎡, 2층 브릭스레트 32.76㎡)으로 신축(이하 ‘이 사건 신 건물’이라고 한다)하였다.

다. 부산 부산진구청은 2000. 2. 17. 이 사건 신 건물이 허가 없이 개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00. 4. 10.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, 2002년에는 이 사건 신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까지 부과하였다.

라. N은 2010. 12. 24. 사망하였다.

마. 한편, 부산 부산진구 K 대 37㎡ 중 26㎡은 2019. 5. 8. 부산 부산진구 O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로 분할되고,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신 건물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어 2020. 10. 19. 수용되었다.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59,036,900원, 이 사건 신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35,338,400원이다.

바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020. 12. 3. 부산지방법원 2020금 제9131호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신 건물에 대한 보상금 합계 94,375,300원을 피공탁자를 망 J의 상속인들로 하여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금액은 피고 C, 피고 D, 피고 E, P(상속지분 각 30/180) 각 15,729,217원, 원고들(상속지분 각 15/180) 각 7,864,609원, 피고 F, G(상속지분 각 10/180) 각 5,243,072원, 피고 H(상속지분 6/180) 2,516,675원(3,145,843원을 공탁하여야 하나 금액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임), 피고 I(상속지분 4/180) 2,726,398원(2,097,228원을 공탁하여야 하나 금액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임)이다.

사. 원고들은 피고들 및 P를 상대로 2021. 1. 18. 부산지방법원 2020카단3103호로 이 사건 신 건물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, 피고 C, D, H, I은 위 가처분 집행 이전에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.

[인정근거] 피고 F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)나머지 피고들 : 갑 제1 내지 11호증,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,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 건물은 이 사건 구 건물과는 면적이나 구조 등에서 동일성이 전혀 없고,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도 이 사건 신 건물을 2000년경 ‘개축’된 건물로 보고 취득세까지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신 건물은 J의 사망 후인 2000년경에 N이 신축한 건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이 사건 신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N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(이에 대하여 피고 C, D, H, I은 이 사건 신 건물은 기존의 이 사건 구 건물을 보수한 것에 그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).

따라서 원고들에게,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C, D은 각 2,944,866원(이 사건 신 건물에 대한 보상금 35,338,400원 × 각 30/180 지분 × 원고들 각 1/2, 원 미만 버림. 이하 같다), 피고 H은 588,973원(35,338,400원 × 6/180 지분 × 원고들 각 1/2), 피고 I은 392,648원(35,338,400원 × 4/180 지분 × 원고들 각 1/2)과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. 6. 24.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5. 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피고 E은 위 공탁금 중 5,889,733원(35,338,400원 × 30/180 지분), 피고 F, G은 위 공탁금 중 각 1,963,244원(35,338,400원 × 10/180 지분)에 대하여 그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(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)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 C, D, H, I은, J의 사망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사용하고 있으므로,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들의 피고 E, F,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C, D, H, I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우

별지